

## 지방자치발전을위한지방자치법등개정건의안

의안번호	제186호
의결년월일	99. 7. 8 (제71회)

제출년월일 : 1999. 7. 2

제 출 자 : 의회운영위원장

## □ 주 문

- 지방자치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지방의회 운영상에 나타난 문제점 해소를 위해 지방의회의 자치입법권의 확대 및 집행부와 지방의회간의 균형관계 형성, 지방의회의 능력증진과 운영의 자율권 확대 등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지방자치법 등의 개정을 건의한다.

## □ 제안이유

- 지방의 자치화와 국경을 초월하는 권역화 등 급변하는 환경 속에 대부분의 국가들이 지방화를 국가 생존 전략의 주요 전략으로 채택하고 지방자치를 강력히 추진하고 있으며, 복잡 다양한 시대의 변천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국가 기능의 상당부분을 대체해 가고 있는 가운데 시장경제 질서를 모색하여 국가경쟁력을 강화하는 것과 같이 중앙정부에 의해서 지방자치가 통제되는 것이 아니라 지역 주민의 자율에 의해 지방자치가 이루어지는 것이 중요함. 주민의 대표인 지방의회가 스스로 지역 환경과 주민 선호에 맞는 의정활동을 수행할 때 지방자치의 궁극적인 목적인 주민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으며 근원적인 국가의 힘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이제는 지방자치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라기보다 국가를 바로 세운다는 관점에서 지방자치 정립과 지방의회 활성화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음. 그러나 지방자치가 재개된 지 8년이 되도록 상당부분 중앙집권적인 제도와 여건이 그대로 이어지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 확보보다는 중앙 정부의 효과적인 통제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고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의 권한이 균형을 이루지 못하는 등 변하지 않고 있는 지방자치제도를 개선하고 그 동안 지방의회 운영상에 나타난 문제점 해소를 위해 지방자치법 등을 다음과 같이 개정토록 국회, 행정자치부 등에 건의하고자 함.

1. 지방의회의 자치입법권의 확대를 위해 조례제정 범위를 확대하고 국가사무의 지방이양을 촉진하며, 자치조직권 보장 및 중앙정부의 과도한 통제를 완화하고 지방정부의 자율성을 확대하며 지방의회의 전국연합회를 설립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편성자율권을 부여하도록 함.
2. 집행부와 지방의회간의 균형관계 형성을 위해 지방의회의 의결대상을 명확히 하고 지방의회의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한 견제권을 강화하고 행정사무처리 상황보고와 질문 답변의 성실성 확보 및 지방자치단체장의 지방의회에 대한 견제기능을 축소하고자 함.
3. 지방의회의 능력 증진과 지방의회 운영의 자율권을 확대하기 위해 회의의 종류와 회의 일수, 자

지구·시·군의회의 의원 정수 및 위원회의 설치와 운영 등을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보좌기구의 설치 및 운영, 의회사무국(처)에 대한 지방의회의 지휘권 강화와 지방의회 의원의 활동비 현실화 등 처우를 개선토록 하고자 함.

## □ 주요골자

### I. 자치입법권의 확대

#### 1. 조례 제정범위 확대

- 헌법 제118조에서 규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인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제정권 범위를 확대함(안 제15조)

→ 법 제15조 중 “법령의 범위 안에서”를 “법률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로 한다.

#### 2. 국가사무의 지방이양 촉진

- 자치사무와 위임사무의 구분이 불명확한 점을 감안하여 개별 법에서 국가사무로 묶여 있는 제9조에 예시한 사무를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 명확히 하고자 지방자치법에 규정된 사항을 다른 법에 우선 하도록 함(안 제9조)

→ 법 제9조제2항의 단서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를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에 따른다.”로 한다.

#### 3. 자치조직권 보장

- 부단체장은 지방공무원 중에서 지방의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함(안 제101조)

→ 법 제101조제1항 중 “두며, 그 정수는 다음 각호와 같다.”를 삭제하며, 제1항의 제1호 내지 제3호를 삭제하고 제2항과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제4항을 삭제하고 제5항을 제4항으로 제6항을 삭제한다.

법 제101조 (부지사, 부시장, 부군수, 부구청장)

② 부지사, 부시장, 부군수, 부구청장의 자격과 직급, 정원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③ “제2항의 부지사, 부시장, 부군수, 부구청장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의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한다.

-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대행 등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의 유고시 권한대행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함(안 제101조의2)

→ 제10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궐위·구속되었거나 60일 이상 장기입원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지사, 부시장, 부군수, 부구청장이 그 권한을 대행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그 직을 가지고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입후보하는 경우에는 후보자 등록을 한 날로부터 선거일까지 부지사, 부시장, 부군수, 부구청장이 당해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을

대행한다.

③제1항 내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권한을 대행하거나 직무를 대리할 부지사, 부시장, 부군수, 부구청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에 정하여진 직제순에 의한 공무원이 그 권한을 대행하거나 직무를 대리한다.

○ 기구 설치 및 변경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은 기구 설치의 기준만 정하고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서 설치함(안 제102조제1항).

→ 법 제102조제1항 중 “시·도에 있어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고, 시·군 및 자치구에 있어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어”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로 한다.

○ 지방자치단체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경비로서 부담하는 지방공무원을 두되 그 정원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함(안 제103조제1항)

→ 법 제103조제1항 중 “그 정원은 대통령령이 정한 기준에 따라”를 “그 정원은”으로 하고 동조 제3항 내지 제5항을 삭제한다.

4. 중앙정부의 과도한 통제 완화

○ 중앙 정부의 과도한 통제를 줄이기 위해 자치단체의 장의 결정이나 처분 중 주무장관 (또는 시·도지사)이 시정명령,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는 것은 국가위임사무에 한하여야 하며 그것도 위법의 경우에 국한함(안 제157조제1항, 제2항)

→ 법 제157조제1항 중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를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중 국가위임사무에”로 하고 “법령에 위반되거나 현저히 부당하여 공익을 해한다고 인정될 때에는”을 “법령에 위반되는 때에는”으로 하며,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정지할 수 있다. 이 경우 자치사무에 관한 명령이나 처분에 있어서는 법령에 위반하는 것에 한한다.”는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주무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2개월 이내에 관할 고등법원에 그 취소 정지판결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로 한다.

→ 법 제157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소송을 접수한 고등법원은 그 접수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심리일을 정하여 심리를 개시하여야 하며 주무장관의 청구가 이유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명령 또는 처분을 취소·정지시키는 판결을 하여야 한다.

→ 법 제157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명령·처분이 집행되어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에 주무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고등법원에 그 집행의 정지를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고등법원은 5일 이내에 그 명령·처분의 집행의 정지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 법 제157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원의 취소 또는 정지처분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주무 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당해 고등법원에 그 사항의 확인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고등법원은 15일 이내에 당사자를 불러 심리를 할 수 있다. 주무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법원의 확인판결을 받을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같음하여 그 사항을 이행할 수 있다.

→ 법 제157조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주무장관 또는 시·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은 그 판결에 대하여 불복이 있을 때에는 판결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대법원에 상소할 수 있다.

○ 직무이행명령과 대집행제도는 먼저 법원에 제소하여 그 명령을 발부받은 후 시행함(안 제157조의 2)

→ 법 제157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법 제157조의2(지방자치단체의 장에 대한 직무이행명령)

②...15일 이내에 당해 지방자치단체를 관할하는 고등법원에 그 이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③고등법원은 소의 제기가 있을 때에는 2개월 이내에 심리일을 지정하여 심리를 개시하여야 한다.

④고등법원은 주무부장관의 명령이 적법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대하여 직무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내려야 한다.

⑤ 주무부장관 또는 시·도지사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불복이 있을 때에는 20일 이내에 대법원에 상소할 수 있다.

○ 중복되는 중앙의 감사를 줄이기 위해서는 행정자치부 및 시·도의 감사는 국가위임사무에 국한하며 자치사무에 관하여는 행정자치부 및 시·도에서 보고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회계에 관하여는 감사원의 감사를 받도록 함(안 제158조)

→ 법 제15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법 제158조(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 및 회계에 대한 감사)

①행정자치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에 대한 보고를 받을 수 있다.

②지방자치단체의 장부 또는 회계에 관하여는 감사원의 감사를 받는다.

→ 법 제159조제1항 중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한다고”를 “법령에 위반된다고”로 한다.

5. 지방정부의 자율성 확대

○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 사무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때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방기구·교육훈련기구·보건진료기구·시험연구기관 및 중소기업 지도기관 등을 직속 기관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4조제1항)

→ 법 제104조제1항 중 “대통령령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

례로”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로 한다.

- 지방자치단체는 특정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5조)

→ 법 제105조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로 하며 단서를 삭제한다.

- 지방자치단체는 원격지 주민의 편의와 특정 지역의 개발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출장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6조)

→ 법 제106조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로 한다.

-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 사무의 일부를 독립하여 수행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합의제 행정기관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7조)

→ 법 제107조 중 “법령 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로 하고, “대통령령 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로 한다.

- 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면·동에 소관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기구를 두되, 그 설치에 관하여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함(안 제111조)

→ 법 제111조 중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로 한다.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항구적 이익이 되거나 또는 비상 재해복구 등의 필요가 있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채 발행계획을 수립하고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후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도록 함(제115조제1항)

→ 법 제115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법 제115조(지방채무 및 채권관리)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항구적 이익이 되거나 또는 비상 재해복구 등의 필요가 있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채 발행계획을 수립하고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후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다.

6. 지방의회의 전국연합회 설립

- 각급 지방의회는 상호간의 교류와 협력을 증진하고 공동의 문제를 협의하기 위하여 전국적 연합회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함(안 제 152조의2 신설)

→ 제8장에 제4절 (제154조의2)을 다음과 같이 신설함.

제4절 지방의회의 연합회

제 154조의2(지방의회의 연합회)

- ① 지방의회의 의장은 상호간의 교류와 협력을 증진하고 공동의 문제를 협의하기 위하여 전국적 연합회를 설립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합회를 설립한 때에는 당해 연합회의 대표자는 이를 지체 없이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합회는 당해 지방의회사무처(국)를 연합회로 구성할 수 있다.
-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합회의 설립 신고와 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의회의 조례로 정한다.

7.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편성자율권 부여

○ 지방자치단체가 주민의 복리에 관한 모든 사무를 자기 책임하에 처리하는 것은 그 사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재정권을 자치 책임적인 결정의 여지를 포함하도록 함 (안 지방재정법시행령 제30조 제1항).

→ 지방재정법시행령 제30조제1항 중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따라”를 “예산편성 기본지침을 준용하여”로 한다.

⇒ 의원 해외연수 횟수를 임기 중 1회로 제한하는 규정을 지방자치단체의 시책 사업과 관련한 해외출장 등에 대해서는 규정 적용을 배제함.

⇒ 의정업무추진비는 지방의회를 대표하여 의장이 지방자치단체 각종 행사에 참여하는 것이 필수적인데 내근 위주인 지방자치단체 부단체장보다 업무추진비가 낮게 책정되어 있어 의장의 업무추진비를 현실화할 필요가 있음.

⇒ 의장단, 상임위원장 업무추진비를 현실에 맞게 상향조정

- 의장 : 월 220만원 → 월 400만원(180만원 증)
- 부의장 : 월 110만원 → 월 200만원(90만원 증)
- 상임위원장 : 월 80만원 → 월 150만원(70만원 증)

현 행 기 준

구 분	기 초	광 역	차 액
의 장	220	500	280
부 의 장	110	250	140
상임위원장	80	150	70

II. 집행부와 지방의회간의 균형관계 형성

1. 지방의회의 의결대상 명확화

○ 자치사무에 대한 지방의회의 의결권한을 확대하고 의결사항을 명확하게 함(안 제35조)

→ 법 제35조 중 지방의회 의결사항 제10호를 제13호로 하며 동항 중에 제10호 내지 제1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 지방자치단체의 장기계획 및 중기재정계획

11. 지방채 발행

12. 외국의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협정 체결

2. 지방의회의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한 견제권 강화

○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감사는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가 주가 되도록 감사 일수를 늘리고 감사의 대상을 고유사무 뿐만 아니라 위임받은 사무까지를 포함하여 이중감사를 방지하고 자율성을 높이고자함 (안 제36조제1항, 제3항, 제7항)

→ 법 제36조제1항 중 “10일”을 “15일”로, “7일”을 “12일”로 한다.

→ 법 제36조제3항 중 “국회와 시·도 의회가 직접 감사하기로 한 사무를 제외하고는”을 삭제한다.

→ 법 제36조제7항 중 “법률에 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고”를 “법률을 준용하고”로, “법률에 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를 “법률 등을 준용한다.”로 한다.

3. 행정사무 처리상황 보고와 질문 답변의 성실성 확보

○ 지방의회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대한 출석 요구시 특별한 사유로 불참할 경우 의장의 사전 승인을 얻도록 함(안 제37조제2항)

→ 법 제37조제2항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에 “의장의 사전 승인을 얻은 후”를 삽입한다.

4. 지방자치단체장의 지방의회에 대한 견제기능 축소

○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지방의회 의결에 대한 재의 요구는 월권 또는 위법일 경우에 한하도록 함(안 제98조제1항)

→ 법 제98조제1항 중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한다고 인정되는”을 “법령에 위반되는”으로 한다.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선결 처분을 할 수 있는 범위를 축소함(안 제100조제1항).

→ 법 제100조제1항 중 “여유가 없거나 지방의회에서 의결이 지체되어 의결되지 아니한”을 “여유가 없는”으로 한다.

○ 지방의회가 새로운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나 안전을 의결하고자 할 때는 미리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을 듣도록 한 것을 삭제함(안 제123조)

→ 법 제123조를 삭제한다.

III. 지방의회의 능력 증진

1. 지방의회 운영의 자율권 확대

○ 시·군·자치구의회의 연간 회의 총일수를 80일 이내에서 120일 이내로 늘리고 정기회를 연 2회의 정기회로 하여 결산 및 감사와 익년도 예산안 처리 회기를 상·하반기로 구분하여 효율적인 의회

운영이 되도록 함 (안 제41조제2항, 제3항).

→ 법 제41조제2항을 “지방의회의 정기회의 회기는 연 2회를 합하여 50일 이내로 하고, 임시회의 회기는 15일 이내로 한다.”로 하고 동조 제3항에서 지방의회의 회의 총일수를 기초 지방의회도 120일로 함.

○ 자치구·시·군의회의 의원 정수 기준을 현행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23조에서 읍·면·동마다 1인으로 규정하고 있어 지역의 실정에 맞지 않아 그 기준을 지방자치단체의 총인구비례로 정하고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결정하도록 함(안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3조)

○ 시·군 및 자치구 의회의 상임위원회 설치 기준을 법적 형평성을 유지하도록 시·도의회와 동일하게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함(안 제50조제2항)

→ 법 제50조제2항 중 “이 경우 시·군 및 자치구의회의 상임위원회 설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를 삭제한다.

⇒ 시행령 제20조의2 삭제

○ 지방의회의 결산검사제도 강화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결산서 작성 시기를 출납 폐쇄 후 1월 이내로 앞당겨 6월 이전에 결산검사위원의 결산검사 및 지방의회의 결산승인을 받도록 하고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함(안 제125조)

→ 법 제125조제1항 중 “3월”을 “30일”로 하고 동조 제2항을 제6항으로 하며 제3항을 삭제하고 제2항 내지 제7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법 제125조(결산)

②검사위원의 수는 시·도의 경우에는 10인 이상 15인 이하, 시·군 및 자치구의 경우에는 5인 이상 10인 이하로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위원은 당해 지방의회 의원이나 공인회계사, 재무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자 중에서 선임한다. 다만 지방의회 의원은 검사위원수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상근직원은 검사위원이 될 수 없다.

④검사위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교육위원회 및 금고에 대하여 검사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그 요구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교육위원회 및 금고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⑤검사위원은 결산검사 종료 후 10일 이내에 검사의견서를 당해 지방의회의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지방의회는 결산심의를 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검사위원을 출석시켜 설명하게 할 수 있다.

⑥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은 때에는 이를 5일 이내에 시·도에 있어서는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시·군 및 자치구에서는 시·도지사에게 각각 보고하고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⑦기타 감사위원의 선임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이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6조는 이를 폐지하고, 지방재정법시행령 제38조제1항 중 "120일"을 "210일"로 한다.

2. 지방의회사무국(처)에 대한 지방의회 지휘권 강화

○ 지방의회사무국 직원은 당해 의장이 지방공무원 중에서 임명함(안 제83조제2항)

→ 법 제83조제2항 중 "지방의회의 의장의 추천에 의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한다."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추천에 의하여 당해 지방의회의 의장이 임명한다."로 한다.

○ 지방의회사무국의 전문인력을 공개채용할 수 있도록 함(안 제83조제3항 신설)

→ 법 제83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함

법 제83조(사무직원의 정원과 임명)

③전문적 지식을 요하는 입법, 예산, 조사, 감사 기타 전문인력을 전문직으로 공개채용할 수 있다.

3. 지방의원의 활동비 현실화 등 처우개선

○ 지방의회 의원의 명예직 조항을 삭제하고 지방의회 의원의 의정활동 강화를 위해 보수 지급과 실비변상을 하되 그 지급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32조)

→ 법 제3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법 제32조 (의원의 보수와 실비 등)

지방의회 의원에게는 의정활동에 대한 보수 지급과 의정활동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의정자료 수집과 조사 연구에 따른 비용, 회의 수당, 국내외 여비 및 사망, 상해 등에 따른 사회보장 비용과 보조직원의 보조수당 등 실비 변상을 하되 그 지급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시행령 제15조제1항

- 시·군 및 자치구의회의 의원과 시·도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를 부단체장과 비슷한 수준으로 하고 시·군·자치구의회의 의원의 회의수당을 증액함.

※ 의정활동비 : 월 350,000원 → 부단체장 1호봉에 준하는 수준

※ 회의수당 : 일 50,000원 → 일 60,000원(10,000원 증)

→ 시행령 제15조제2항

- 정기회 및 임시회 회기협의 개최를 위해 비회기 중에 회의 개최가 불가피한 의회운영위원회의 경우 비회기 중이라도 회의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

※ 명예직이라는 것은 직업관료에 반대되는 개념으로 지방의회 의원은 직업관료가 아닌 일반 주민으로부터 선출하며 지방의회 의원으로 선출된 자는 다른 직업을 가질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며 무보수는 명예직의 개념 요소는 아니다.

오늘날의 민주주의는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의 참여가 동시에 보장되는 대중민주주의이다.

지방의회 의원이 그의 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스스로 부담하는 경우에 가지지 못한 자의 지방

의회 진출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지방의회 의원이 의정활동에 전념하는 경우에 그 불이익은 보상되어야 하며 그 활동에 소요되는 경비는 보상되어야 한다. 지방의회 의원에게 필요한 경비를 지급하지 않는다는 것은 다양한 계층의 참여를 막는 것이며, 주민 실생활과 가장 밀접한 지방 자치를 위한 충분한 지방의회의 의정활동을 기대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지방자치법등개정안 신·구조문 대비표

○ 지방자치법 및 동법시행령

현 행	개 정 안
<p>제9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①지방자치단체는 그 관할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p> <p>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1~6 (생략)</p>	<p>제9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①(현행과 같음)</p> <p>②..... .....<u>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에 따른다.</u></p> <p>1~6 (현행과 같음)</p>
<p>제15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p>	<p>제15조(조례) ..... <u>법률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u>..... ..... .....</p>
<p>제32조(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①지방의회의원은 명예직으로 하되, 다음 각항의 비용을 지급한다.</p> <p>1. 의정자료의 수집·연구와 이를 위한 보조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하여 매월 지급하는 의정활동비. 다만, 의정자료의 수집·연구를 위한 보조활동의 비용은 시·도의회의원에 한한다.</p> <p>2.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견이나 의장의 명예 의하여 공무로 시행할 때 지급하는 여비</p> <p>3. 회기 중에 지급하는 회의수당</p>	<p>제32조(의원의 보수와 실비 등) 지방의회의원에게는 의정활동에 대한 보수지급과 의정활동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의정자료 수집과 조사연구에 따른 비용, 회의수당, 국내의 여비 및 사망, 상해 등에 따른 사회보장 비용과 보조직원의 보조수당 등 실비변상을 하되 그 지급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현행	개정안
<p>②제1항 각호에 규정된 여비의 지급기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p> <p>제35조(지방의회의 의결사항) ①지방의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조례의 제정 및 개폐</li> <li>2. 예산의 심의·확정</li> <li>3. 결산의 승인</li> <li>4. 법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사용료·수수료·분담금 또는 가입금의 부과와 징수</li> <li>5. 기금의 설립·운용</li> <li>6. 중요자산의 취득·처분</li> <li>7. 공공시설의 설치·관리 및 처분</li> <li>8.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li> <li>9. 청원의 수리와 처리</li> <li>10. 기타 법령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li> </ol> <p>(신설) (신설) (신설)</p>	<p>⇒ 시행령 제15조제1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군 및 자치구의회 의원과 시·도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를 부단체장 1호봉에 준하는 수준으로 하고 시·군·자치구의회 의원의 회의수당을 10,000원 증액함.</li> </ul> <p>※ 의정활동비: 월 350,000원→부단체장1호봉에 준하는 수준</p> <p>※ 회의수당: 일 50,000원→일 60,000원(10,000원 증)</p> <p>⇒ 시행령 제15조제2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비회기 중에 회의개최가 불가피한 의회운영위원회회의 경우 비회기 중이라도 회의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li> </ul> <p>제35조(지방의회의 의결사항) ①(현행과 같음)</p> <p>1~9(현행과 같음)</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0. 지방자치단체의 장기계획 및 중기재정계획</li> <li>11. 지방채 발행</li> <li>12. 외국의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 협정 체결</li> <li>13. (현행 제10호와 같음)</li> </ol>

현 행	개 정 안
<p>제36조(행정사무감사 및 조사권) ①지방의회는 매년 1회 당해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하여 시·도에 있어서는 <u>10일</u>, 시·군 및 자치구에 있어서는 <u>7일</u>의 각 범위 내에서 감사를 실시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중 특정사안에 관하여 본회의 의결로 본회의 또는 위원회로 하여금 조사하게 할 수 있다.</p> <p>②제1항의 조사를 발의하고자 할 때에는 이유를 명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연서가 있어야 한다.</p> <p>③지방자치단체 및 그 장이 위임받아 처리하는 국가사무와 시·도의 사무에 대하여 <u>국회와 시·도의회가 직접 감사하기로 한 사무를 제외하고는 그 감사를</u> 각각 당해 시·도의회와 시·군 및 자치구의회가 행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회와 시·도의회는 그 감사결과에 대하여 당해 지방의회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p> <p>④제1항의 감사 또는 조사와 제3항의 감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현지확인을 하거나 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계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를 출석하게 하여 증인으로서 선서한 후 증언하게 하거나 참고인으로서 의견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p> <p>⑤제4항이 규정에 의한 증언에서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으며 제4항의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p>	<p>제36조(행정사무감사 및 조사권) ①..... ..... .....<u>15일</u>,..... .....<u>12일</u>,..... ..... ..... ..... .....</p> <p>②(현행과 같음)</p> <p>③..... .....<u>그 감사를</u>..... ..... ..... ..... .....</p> <p>④~⑥ (현행과 같음)</p>

현행	개정안
<p>⑥제5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부과절차는 제20조의 규정에 의한다.</p> <p>⑦제1항의 감사 또는 조사와 제3항의 감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u>국정감사및조사에관한법률에 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고</u>, 제4항 및 제5항의 선서·증언·감정 등에 관한 절차는 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에 <u>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u></p>	<p>⑦..... ..... <u>법률을 준용하고</u>, ..... ..... ..... ..... <u>법률등을 준용한다.</u></p>
<p>제37조(행정사무처리사항의 보고와 질문응답) ①(생략)</p> <p>②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계공무원은 지방의회나 그 위원회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출석·답변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u>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u> 출석·답변하게 할 수 있다.</p> <p>③(생략)</p>	<p>제37조(행정사무처리사항의 보고와 질문응답) ①(현행과 같음)</p> <p>②..... ..... ..... ..... · <u>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의장의 사전승인을 얻은 후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u>.....</p> <p>③(현행과 같음)</p>
<p>제41조(개회·휴회·폐회와 회의일수) ①지방의회의 개회·휴회·폐회와 회의는 지방의회가 의결로 이를 정한다.</p> <p>②정기회의 회기는 시·도의회는 경우 40일 이내, 시·군 및 자치구의회의 경우 35일 이내로 하고, 임시회의 회기는 15일 이내로 한다.</p> <p>③연간 회의 총일수는 정기회 및 임시회를 합하여 시·도에 있어서는 120일, 시·군 및 자치구에 있어서는 80일을 초과할 수 없다.</p>	<p>제41조(개회·휴회·폐회와 회의일수) ①(현행과 같음)</p> <p>②<u>지방의회의 정기회의 회기는 연 2회를 합하여 50일 이내로 하고, 임시회의 회기는 15일 이내로 한다.</u></p> <p>③<u>지방의회의 연간 회의 총일수는 정기회 및 임시회를 합하여 120일을 초과할 수 없다.</u></p>
<p>제50조(위원회의 설치) ①지방의회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위원회를 둘 수 있다.</p> <p>②위원회는 소관 의안과 청원 등을 심사·처리하는 상임위원회와 특정한 안건을 일시적으로 심사·처리하기 위한 특별위원회의 2종으로 한다.</p>	<p>제50조(위원회의 설치) ①(현행과 같음)</p> <p>②..... ..... ..... .....</p>



현 행	개 정 안
<p>정수는 다음 각호와 같다.</p> <p>1. 특별시와 부시장의 정수 : 3인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2. 광역시와 부시장 및 도의 부지사의 정수 : 2인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3. 시의 부시장, 군의 부군수 및 자치구의 부구청장의 정수 : 1인으로 한다.</p> <p>②특별시와 광역시의 부시장, 도의 부지사는 정무직 또는 일반직 국가공무원으로 보하며, 그 직급은 대통령령으로 한다. 다만,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시와 광역시의 부시장, 도의 부지사를 2인 이상 두는 경우에 1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무직 또는 별정직 지방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자격기준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p> <p>③제1항의 정무직 또는 일반직 국가공무원으로 보하는 부시장·부지사는 시·도지사의 제청으로 내부부장관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 경우 제청된 자에게 범죄 경력사유가 없는 한 30일 이내에 그 임명절차를 종료하여야 한다.</p> <p>④시의 부시장, 군의 부군수, 자치구의 부구청장은 일반직 지방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급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당해 시장·군수·구청장이 임명한다.</p> <p>⑤시·도의 부시장과 부지사, 시의 부시장·부군수·부구청장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보좌하여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p>	<p>1. (삭제)</p> <p>2. (삭제)</p> <p>3. (삭제)</p> <p>②부지사, 부시장, 부군수, 부구청장의 자격과 직급, 정원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 단체의 조례로 정한다.</p> <p>③제2항의 부지사, 부시장, 부군수, 부구청장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의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한다.</p> <p>(삭제)</p> <p>④(현행 제5항과 같음)</p>

현행	개정안
<p>⑥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사고가 있는 때에는 당해 시·도의 부시장과 부지사, 시의 부시장·부군수·부구청장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p> <p>(신설)</p>	<p>(삭제)</p> <p>제101조의2(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대행 등)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궐위·구속되었거나 60일 이상 장기입원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지사, 부시장, 부군수, 부구청장이 그 권한을 대행한다.</p> <p>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그 직을 가지고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입후보하는 경우에는 후보자 등록을 한 날로부터 선거일까지 부지사, 부시장, 부군수, 부구청장이 당해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을 대행한다.</p> <p>③제1항 내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권한을 행하거나 직무를 대리할 부지사, 부시장, 부군수, 부구청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에 정하여진 직제순에 의한 공무원이 그 권한을 대행하거나 직무를 대리한다.</p>
<p>제102조(행정기구) ①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기구를 두되, 시·도에 있어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고 시·군 및 자치구에 있어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p> <p>②(생략)</p>	<p>제102조(행정기구) ①.....</p> <p>.....대통령이 정하는 범위안에서.....</p> <p>.....</p> <p>②(현행과 같음)</p>
<p>제103조(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①지방자치단체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경비로써 부담하는 지방공무원을 두되, 그 정원은 대통령령이 정한</p>	<p>제103조(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①.....</p> <p>.....그 정원은.....</p>



현행	개정안
<p>기준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p> <p>②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지방공무원의 정원 관리에 있어서 그 규모의 적정화와 운영의 합리화를 도모하여야 한다.</p> <p>③지방공무원의 임용과 시험·자격·보수·복무·신분보장·징계·교육훈련 등에 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p> <p>④지방자치단체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뭍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공무원을 둘 수 있다.</p> <p>⑤제4항에 규정된 국가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 제32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5급 이상의 국가공무원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제청으로 소속장관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고, 6급 이하의 국가공무원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제청으로 소속장관이 임명한다.</p>	<p>.....</p> <p>.....</p> <p>②현행과 같음</p> <p>③(삭제)</p> <p>④(삭제)</p> <p>⑤(삭제)</p>
<p>제104조(직속기관) ①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사무의 범위안에서 필요한 때에는 대통령령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소방기구·교육훈련기구·보건진료기구·시험연구기관 및 중소기업지도기관 등을 직속기관으로 설치할 수 있다.</p>	<p>제104조(직속기관) ①.....</p> <p>.....<u>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u>.....</p> <p>.....</p>
<p>제105조(사업소) 지방자치단체는 특정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사업소를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만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제103조제1항의 정원범위안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써 사업소를 설치할 수 있다.</p>	<p>제105조(사업소) .....</p> <p>.....<u>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u>.....</p> <p>.....(단서 삭제).....</p>

현행	개정안
<p>제106조(출장소) 지방자치단체는 원격지 주민의 편의와 특정지역의 개발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u>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u>로 출장소를 설치할 수 있다.</p>	<p>제106조(출장소) ..... ..... .....<u>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u>.....</p>
<p>제107조(합의제행정기관) ①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사무의 일부를 독립하여 수행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u>별령 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합의제행정기관을 설립할 수 있다.</u></p> <p>②제1항의 합의제행정기관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u>대통령령 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u></p>	<p>제107조(합의제행정기관) ..... .....<u>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u>..... ..... ②..... .....<u>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u>.....</p>
<p>제111조(하부행정기구) 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면·동에 소관 행정기구를 분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기구를 두되, 그 설치에 관하여는 <u>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이를 정한다.</u> 이 경우 동은 제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동을 말한다.</p>	<p>제111조(하부행정기구) ..... ..... .....<u>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u>..... .....</p>
<p>제115조(지방채무 및 채권관리) ①<u>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항구적 이익이 되거나 또는 비상재해복구 등의 필요가 있는 때에는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범위 안에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다.</u> 이 경우 내무부장관은 <u>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방채발행계획을 수립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u></p> <p>②~⑤(생략)</p>	<p>제115조(지방채무 및 채권관리) ①<u>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항구적 이익이 되거나 또는 비상재해복구 등의 필요가 있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채 발행계획을 수립하고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후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다.</u></p> <p>②~⑤(현행과 같음)</p>
<p>제123조(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제정 등) <u>지방의회가 새로운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나 안건을 의결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u></p>	<p>제123조(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제정 등) (삭제)</p>

현행	개정안
<p>제125조(결산)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출납폐쇄 후 3월 이내에 결산서 및 증빙서류를 작성하고 지방의회가 선임한 감사위원의 감사의견서를 첨부하여 다음연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p> <p>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은 때에는 이를 5일 이내에 시·도에 있어서는 내부부장관에게, 시·군 및 자치구에 있어서는 시·도지사에게 각각 보고하고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p>	<p>제125조(결산) ① ..... 30일..... .....</p> <p>②감사위원의 수는 시·도의 경우에는 10인 이상 15인 이하, 시·군 및 자치구의 경우에는 5인 이상 10인 이하로 한다.</p>
<p>③제1항의 감사위원의 선임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감사위원은 당해 지방의회 의원이거나 공인회계사, 재무관리에 관한 전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자 중에서 선임한다. 다만, 지방의회 의원은 감사위원수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상근 직원은 감사위원이 될 수 없다.</p>
<p>(신설)</p>	<p>④감사위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교육위원회 및 금고에 대하여 감사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그 요구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교육위원회 및 금고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p>
<p>(신설)</p>	<p>⑤감사위원은 결산검사 종료 후 10일 이내에 감사의견서를 당해 지방의회의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지방의회는 결산 심의를 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감사위원을 출석시켜 설명케 할 수 있다.</p>
<p>(신설)</p>	<p>⑥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은 때에는 이를 5일 이내에 시·도에 있어서는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시·군 및 자치구에 있어서는 시·도지사에게 각각 보고하고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p>

현행	개정안
<p>(신설)</p>	<p>⑦기타 <u>검사위원의 선임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u> <u>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u> ⇒ 시행령 제46조 삭제 → 제8장에 제4절(제154조의2)을 다음과 같이 신설함</p>
<p>(신설)</p>	<p><b>제4절 지방의회의 연합회</b> <u>제154조의2(지방의회의 연합회) ①지방의회의 의</u> <u>장은 상호간의 교류와 협력을 증진하고 공동의</u> <u>문제를 협의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u> <u>라 각각 전국적 연합회를 설립할 수 있다.</u>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합회를 설립한 때에는 당해 연합회의 대표자는 이를 지체없이 행정자 치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합회는 당해 지방의회 사무처(국)를 연합회로 구성할 수 있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합회의 설립 신고와 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의회의 조 례로 정한다.</p>
<p>제157조(위법·부당한 명령·처분의 시정) ①지방자 치단체의 사무에 관한 그 장의 명령이나 처분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현저히 부당하여 공익을 해 한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도에 대하여는 주무부 장관이, 시·군 및 자치구에 대하여는 시·도지사 가 기간을 정하여 서면으로 시정을 명하고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이를 취소하 거나 정지할 수 있다. 이 경우 자치사무에 관한 명령이나 처분에 있어서는 법령에 위반하는 것 에 한한다.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 치사무에 관한 명령이나 처분의 취소 또는 정지</p>	<p>제157조(위법·부당한 명령·처분의 시정) ①지방자 치단체의 사무 중 국가위임 사무에 ..... 법령에 위반되는 때에는..... ..... ..... .....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주무장 관 또는 시·도지사가 2개월 이내에 관할 고등법 원에 그 취소 정지 판결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 할 수 있다. ②소송을 접수한 고등법원은 그 접수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심리일을 정하여 심리를 개시하여</p>

현 행	개 정 안
<p>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때에는 그 최소 또는 정지처분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대변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p> <p>(신설)</p> <p>(신설)</p> <p>(신설)</p> <p>제157조의2(지방자치단체의 장에 대한 직무이행명령) ① 생략</p> <p>②주무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1항의 기간 내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비용부담으로 대신 집행하거나 행정·재정상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행정대집행에 관하여는 행정대집행법을 준용한다.</p>	<p>야 하며 주무장관의 청구가 이유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명령 또는 처분을 취소·정지시키는 판결을 하여야 한다.</p> <p>③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명령·처분이 집행되어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에 주무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고등법원에 그 집행을 정지를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고등법원은 5일 이내에 그 명령·처분의 집행의 정지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p> <p>④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원의 최소 또는 정지처분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주무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당해 고등법원에 그 사항의 확인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고등법원은 15일 이내에 당사자를 불러 심리를 할 수 있다. 주무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법원의 확인판결을 받을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감음하여 그 사항을 이행할 수 있다.</p> <p>⑤주무장관 또는 시·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은 그 판결에 대하여 불복이 있을 때에는 판결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대변원에 상소할 수 있다.</p> <p>제157조의2(지방자치단체의 장에 대한 직무이행명령) ① (현행과 같음)</p> <p>②..... ..... .....15일 이내에 당해 지방자치단체를 관할하는 고등법원에 그 이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p>

현 행	개 정 안
<p>③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이행명령에 이의가 있는 때에는 이행명령서를 접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행명령의 집행을 정지하게 하는 집행정지결정을 신청할 수 있다.</p> <p>(신설)</p> <p>(신설)</p>	<p>③고등법원은 소의 제기가 있는 때에는 2개월 이내에 심리일을 지정하여 심리를 개시하여야 한다.</p> <p>④고등법원은 주무부장관의 명령이 적법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대하여 직무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내려야 한다.</p> <p>⑤주무부장관 또는 시·도지사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불복이 있을 때에는 20일 이내에 대법원에 상소할 수 있다.</p>
<p>제158조(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에 대한 감사) 내무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에 관하여 보고를 받거나 서류·장부 또는 회계를 감사할 수 있다. 이 경우 감사는 법령 위반 사항에 한하여 실시한다.</p>	<p>제158조(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 및 회계에 대한 감사) ①행정자치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에 대한 보고를 받을 수 있다.</p> <p>②지방자치단체의 장부 또는 회계에 관하여는 감사원의 감사를 받는다.</p>
<p>제159조(지방의회 의결의 재의와 제소) ①지방의회의 의결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한다고 판단될 때에는 시·도에 대하여는 내무부장관이, 시·군 및 자치구에 대하여는 시·도지사가 재의를 요구하게 할 수 있고, 재의의 요구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에 이의를 붙여 재의를 요구하여야 한다.</p> <p>(이하 생략)</p>	<p>제159조(지방의회 의결의 재의와 제소) ①.....          .....법령에 위반된다고          .....          .....          .....          .....          .....</p>

○ 지방재정법 및 동법시행령

현행	개정안																
<p>지방재정법 제30조제5항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예산편성기본지침을 규율하고 있을 뿐 그 구속성 여부에 대하여는 언급이 없는데 동법시행령 제30조제1항은 법령의 위임근거도 없이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은 다른 법령에 다른 규정이 없는 한 법 제30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예산편성기본지침에 따라 편성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예산편성지침이 지방자치단체를 법적으로 구속하는 것처럼 규정하고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침해하고 있고 헌법 제75조에서 보장된 행정 각부의 조직과 직무범위는 법률로 정하도록 한 규정에 위반되고 있음</p>	<p>• 지방재정법시행령 제30조제1항의 “예산편성기본지침에 따라 편성하여야 한다.”를 “예산편성기본지침을 준용하여 편성한다.”로 개정          ⇒ 의원해외연수의 임기 중 1회로 제한하는 규정을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사업과 관련한 해외출장 등에 대해서는 규정 적용을 배제          ⇒ 의장 업무추진비는 지방의회를 대표하여 의장이 지방자치단체의 각종 행사에 참여하는 것이 필수적인데 내근 위주인 지방자치단체의 부단체장보다 업무추진비가 낮게 책정되어 있어 의장의 업무추진비를 현실화할 필요가 있음          ⇒ 의장단, 상임위원장 업무추진비를 현실에 맞게 상향조정</p> <p>• 의장 : 월 220만원→월 400만원(180만원 증)          • 부의장 : 월 110만원→월 200만원(90만원 증)          • 상임위원장 : 월 80만원→월 150만원(70만원 증)</p> <p style="text-align: center;">현행 기준</p> <table border="1" data-bbox="743 1150 1245 1359"> <thead> <tr> <th>구분</th> <th>기초</th> <th>광역</th> <th>차액</th> </tr> </thead> <tbody> <tr> <td>의장</td> <td>220</td> <td>500</td> <td>280</td> </tr> <tr> <td>부의장</td> <td>110</td> <td>250</td> <td>140</td> </tr> <tr> <td>상임위원장</td> <td>80</td> <td>150</td> <td>70</td> </tr> </tbody> </table>	구분	기초	광역	차액	의장	220	500	280	부의장	110	250	140	상임위원장	80	150	70
구분	기초	광역	차액														
의장	220	500	280														
부의장	110	250	140														
상임위원장	80	150	70														
<p>※ 지방재정법시행령          제38조(세입·세출결산의 제출)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한 세입·세출결산서에 지방자치법 제1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사위원의 감사의견서를 첨부하여 다음 다음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까지 이를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p>	<p>제38조(세입·세출결산의 제출) ①.....          .....          .....          .....          .....210일.....          .....</p>																

○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현행	개정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3조에서 자치구·시·군의회의 의원정수를 읍·면·동마다 1인으로 규정하고 있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자치구·시·군의회의 의원정수 책정 기준을 지방자치단체의 총인구에 비례하여 의원수를 결정하고 그 세부사항을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함.</li> </ul>